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19 발의년월일 : 2018, 9, 21, 발 의 의 원 : 김 대 현 의원

김 병 태 의원

김 원 규 의원

유 영 애 의원

임 태 상 의원

전 경 원 의원

정 천 락 의원

1. 제안이유

- O 도시재생사업은 경제·사회·문화적 활력회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완료 이후,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O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대구시의 확정 또는 승인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 견 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함에 있어,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체인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 재생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본문과 각 호를 제1항과 같은 항의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또는 승인에 있어, 주민의 참여 여부와 그 정도를 검토하는 등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주민의 성별·연령·계층·지역적 특성이 반 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혂 행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1. 공청회 개최 결과
- 2.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 3. 해당 구·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신 설〉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 장등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 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 정 안

- 1. 공청회 개최 결과
- 2.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 3. 해당 구·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②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또는 승인에 있어, 주민의 참여 여부와 그 정도를 검토하는 등 도시재생의 주체 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 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 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주민의 성별・연 령・계층・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 여야 한다.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계획의 목표
-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 5. 예산 집행 계획
-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 ⑥ 생략

-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 ⑧ 생략